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62

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이헌승·곽규택·서일준

임이자 · 김정재 · 박덕흠

윤상현・황 희・박성훈

김도읍 · 서범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보상금제도는 TV, 라디오 등의 방송 제작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 시의 권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,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 최근 K-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토대가 된제도로 평가받고 있음.

한편, 최근 방송 콘텐츠 사업 환경은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V OD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나, 이에 대해서는 방송보상금제도 가 적용되지 않아 방송사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자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.

이는 방송사를 통해서 제작되는 많은 콘텐츠들이 방송 직후 또는 방송 중 IPTV, OTT등으로 제공되어 고객들에게 소비되는 콘텐츠 유 통 구조와 고객 이용 형태가 현 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임.

이에 저작권 이용 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던 방송보상금제의 취지가 더 빠르게 변하는 현재에도 계승·확대되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함으로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제1항 본문 중 "방송하는 경우에는"을 "방송하는 경우에는(그 방송한 영상물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 으로 한다.

제82조제1항 본문 중 "방송하는 경우에는"을 "방송하는 경우에는(그 방송한 영상물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75조(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제75조(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) ① 방송사업자가 대한 보상) ① -----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-----방송하는 경우에는(그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 방송한 영상물을 직접 혹은 제 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실 3자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를 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 포함한다)-----. -----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 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82조(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 제82조(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 에 대한 보상) ① 방송사업자 에 대한 보상) ① -----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 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 송하는 경우에는(그 방송한 영 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 상물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하여야 한다. 다만, 음반제작자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----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 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 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